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17 선고 2022가단136499 판결 [사해행위 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김정원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3. 3.

판 결 선 고 2023. 3. 17.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9,819,920원과 그중 25,227,780원에 대하여 2022.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제4항에 나오는 각 토지 중 각 2/13지분, 별지 목록 제5항에 나오는 토지 중 6/78지분과 별지 목록 제6항에 나오는 토지 중 2/26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들이 2022. 2. 4.경 맺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모두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 C는 피고 B에게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판사 박관근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 B은 그 '채무자'이며,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주문 제2항에 나오는 해당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의 당초 공동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이른바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D 주식회사는 2013. 10. 25. 피고 B에게 3,500만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16.9%, 연체이율은 연 28.9%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8. 6. 4. E 주식회사에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22. 4. 13.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각 채권양도에 따라 69,819,920원과 그중 25,227,780원에 대하여 2022.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피고 B의 아버지는 F였는데, F는 2003. 9. 1. 사망하였고, 피고 B은 F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법정 상속지분을 공동상속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피고 C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22. 2. 11.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피고 B의 재산인데, 피고 B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 C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 피상속인 F는 2003. 9. 1.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C'(피고2, 수익자)와 자식들인 'G', 'H', 'I', 'J' 및 'B(피고1, 채무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모자관계이고, 채무자 피고 B의 상속지분은 '2/13'입니다.

F는 2003. 9. 1. 사망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이 실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던 때는 '2022. 2. 4.'입니다.
따라서 위 2022. 2. 4.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입니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외에도 추가로 발견된 별지 목록 제2항~제4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3/6지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발견된 부동산을 사해행위취소 대상 부동산으로 추가합니다.

위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6/78지분(= 3/6 지분 × 상속지분 2/13),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2/26 지분(= 1/2 지분 × 상속지분 2/13)은 피고 B에게 상속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3)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C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끝-

부동산 목록

1. 경상북도 청도군 [ ] 대 132㎡

2. 경상북도 청도군 [ ] 답 111평

3. 경상북도 청도군 [ ] 답 144평

4. 경상북도 청도군 [ ] 전 360평

5. 경상북도 청도군 [ ] 답 4462㎡

6. 경상북도 청도군 [ ] 임야 3967㎡ 끝.